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 화 : 490-3315~9



제1526호 2009. 3. 4.

공 고

제2009-186호	구의회 부의안건 공고	2
제2009-187호	구의회 부의안건 공고	4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▶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▶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▶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 →
 D-2일 편집·교정 →
 D-1일 편집·교정 →
 D일 발간

- ▶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공 고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-186호

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1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

가. 제정이유

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규정한 건강에 이로운 건강도시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함.(안 제4조)
- (2)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,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.(안 제5조)
- (3)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자문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함.
(안 제6조제1항)
- (4)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,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(안 제6조제3항, 제4항)
- (5) 건강도시 생활터별, 분야별 건강도시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음.
(안 제6조제5항)

(6) 위원회 구성(안 제7조)

- 위원수 : 15인이내(위원장 : 부구청장, 부위원장 : 보건소장)
- 위 원 : 주민 또는 민간단체, 전문가, 구의원, 관련 국장 등
- 임 기 : 2년(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)

(7) 위원의 해촉 : 부패연루, 품위손상, 장기치료 등의 경우(안 제10조)

(8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.(안 제11조)

(9) 구민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해 의견 제시 가능함.(안 제12조)

(10)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.(안 제13조)

(11) 구청장은 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기술의 교류나 홍보 활동 등에 협력해야 함.(안 제14조)

II. 본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비치함(☎ 490-3746)

2009년 3월 4일

중 량 구 청 장

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여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1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가. 개정이유

주유소, 주차장, 터미널,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진출·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,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(1) 자동차와 관련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함.

진 출 · 입 로	자동차관련시설 (주유소·주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·자동차수리소·승강대·화물적치장·휴게소 등)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	점용면적 1㎡	1년	<u>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</u>
	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·입로			<u>토지가격에 0.020 를 곱한 금액</u>

(2) 버스카드판매대가 가로가관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문구(버스카드판매대)를 삭제함.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에 비치함(☎490-3400)

2009년 3월 4일

중랑구청장